

## ●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-445호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를 고시함에 있어,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1월 22일

국립환경과학원장

###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 일부개정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

- 고유번호 “2021-1-1080”란부터 “2021-1-1098”란까지 신설

- 고유번호 “97-1-80”란, “97-1-82”란, “97-1-156”란, “97-1-163”란, “97-1-192”란, “97-1-268”란, “97-1-377”란, “2000-1-509”란, “2012-1-637”란, “2014-1-688”란, “2017-1-801”란, “2019-1-913”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

- 고유번호 “99-1-501”란은 삭제

나.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, 유해화학물질의 표시,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(부칙)

#### 3. 의견제출

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, 단체(협회)는 2021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(위해성평가연구과, 전화 032-560-7245, 모사전송 032-568-2038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수정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본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([www.nier.go.kr](http://www.nier.go.kr)) 내 「법령정보-행정예고」에 게재되어 있음